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9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장 선출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4)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1)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7)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9)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1)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1)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7)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5)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30.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8)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0)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8)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9)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0)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4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1)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3)
48.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6)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7)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6)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9)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옹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5)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8)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6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6)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2)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6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9)
66.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4)
67.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0)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6)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2)
7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7)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6)
7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2)
7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8)
7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8)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9)
8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4)
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1)
8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3)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5)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6)
8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0)
8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1)
8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7)
88.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9)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3)
9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4)
9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4)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7)
9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9)
94.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8)
9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3)
9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4)
9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4)
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0)

9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2)
 10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1)
 10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3)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7)
 103.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7)
 1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8)
 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5)
 108.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09.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10.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11.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김용민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55)
-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8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8
o 간사 및 소위원장(박형수) 인사	9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0)	9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4)	9
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1)	9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7)	9
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6)	9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6)	9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7)	9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9)	9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3)	9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7)	9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9)	10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0)	10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1)	10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0)	10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7)	10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1)	10
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7)	10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7)	10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9)	10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9)	10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9)	10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8)	10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10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10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5)	10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10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10
30.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10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10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8)	10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10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10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0)	10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10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8)	10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10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10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10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10
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9)	10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0)	10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10
4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10
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1)	10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3)	10
48.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6)	10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7)	10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10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6)	11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11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11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9)	11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11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11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옹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11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5)	11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8)	11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11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11
6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6)	11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2)	11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11
6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9)	11
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4)	11
6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0)	11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11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11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6)	11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2)	11
7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7)	11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11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11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6)	11
7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2)	11
7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8)	11
7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8)	11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9)	11
8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4)	11
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1)	11
8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3)	11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5)	11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6)	12
8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0)	12
8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1)	12
8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7)	12
8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9)	12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3)	12
9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4)	12
9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4)	12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7)	12
9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9)	12

9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8)	12
9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3) ...	12
9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4) ...	12
9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4)	12
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0)	12
9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2)	12
10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1)	12
10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3) ...	12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7)	12
103.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12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12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7)	12
1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8)	12
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5) ...	12
108.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2
109.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2
110.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2
111.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김용민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55)	12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12월과 1월에 걸쳐 보임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오시는 대로 인사말씀 듣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오늘 처음 오게 됐습니다. 12월 3일 계엄과 또 그 이후에 탄핵으로 인해서 운영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대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국회 전반적인, 운영위원회 제가 처음인데 많은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여야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운영위에서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월 6일 자로 보임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위는 위원회 중에 대표 격인 위원회입니다. 그러므로 타 위원회에 좀 수범이 되는 운영 사례를 보여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동안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운영 사례를 보여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부터 양보와 타협 또 상호 존중하는 그런 정상적인 의회 운영에 좀 모범을 보여 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지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예결위에서나 교육위에서 많이 뛴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반갑고요. 운영위가 국회 운영을 맡고 있는 것만큼 국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즌 2를 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9분)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형수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고 현재 소위원회 구성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님이 맡아 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박형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신 박형수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 간사 및 소위원장(박형수) 인사

(10시10분)

○위원장 박찬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또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찬대 예, 이제 간사님으로서……

○박형수 위원 간사로 선임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박성준 간사님과 협의를 해 왔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협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래도 원내대표님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듣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0)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4)

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1)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7)

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6)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6)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7)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9)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3)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7)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9)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0)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1)
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0)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7)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1)
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7)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7)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9)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9)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9)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8)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5)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30.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8)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0)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8)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9)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0)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4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1)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3)
4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6)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7)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6)
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9)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5)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8)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6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6)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2)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6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9)
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4)
6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0)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6)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2)
7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7)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6)
7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2)
7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8)
7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8)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9)
8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4)
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1)
8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3)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5)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6)
8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0)
8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1)
8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7)
8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9)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3)
9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4)
9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4)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7)
9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9)
9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8)
9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3)
9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4)
9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4)
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0)
9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2)
10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1)
10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3)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7)
103.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7)
1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8)
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5)
108.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09.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10.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11.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김용민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55)

(10시12분)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1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까지 10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관례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대체토론을 생략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0항까지 108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마련된 안건들은 처리가 되었는데요. 혹시 의견이나 토론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신장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면……

○신장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신장식 위원 예.

위원장님,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안내를 받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국회에서 엄중히 묻고 따지는 절차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7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야 6당 의원 116명이 연명을 해서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긴급구제 신청에는 즉각 조사관 파견하고 예정된 회의까지 앞당겨 개최하며 내란세력 비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과거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은 가차없이 기각했던 인권위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인권을 선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인권적인 위원들이 인권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놀이터로 전락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정권의 방패막이이자 내란범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 업무보고가 누락된 이유를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

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재를 이유로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도 있고 기관보고와 현안질의를 못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권위 사태 그리고 김용원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한 인권위의 작태에 대해 국회가 철저하게 질의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비상임위원들 모두 즉각 출석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해명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줘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들을 조속히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질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 상정할 때는 관례상 기관 관계자들이 보통 배석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고요, 법안이 의결이 된다라면 관련 기관의 관계자가 배석해서 같이 회의에 참여를 할 텐데요.

지금 신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박형수 간사님이 공식적으로 의결되고 선출되었으니 양당의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그다음에 안건 상정 등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순서에 따라서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현안질의 대상이 대통령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인용된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대통령경호처가, 명태균 씨에 의한 인사 청탁 연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5급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다가 경호처 본부로 옮겨 오는데 명태균 씨가 청탁을 하고 그게 수용됐다는 취지인데 뉴스타파 보도는 단순 인용 보도인 거고요.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청탁을 한 사람으로 지목된 권 모 씨, 경호처 직원입니다. 그 권 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톡이 검찰에 의해서 복원된 거예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그 보도를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권 모 씨가 보낸 카톡 내용이 이겁니다. ‘박사님, 오늘 인사가 났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습니다’, 여기서 박사님이 명태균 씨예요. 이건 국정농단이지요.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검찰 보고서에 보면 인사 청탁이 의심된다고까지 검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 등을 통한 규명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건 별건으로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사 청탁 문제와 관련된

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공유하고 싶어요. 문제를 서로 인식을 해야 현안질의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대통령실을 상대로 규명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확보하고 있는 음성 녹취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이게 여야 협의가 사전에 안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우선 위원장님께 여야 협의를 통해서 명태균 씨의 음성 녹취가 이 공간에서 재생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노종면 위원님, 지금 우리 운영위 관례상 회의장에서는 방송에 방영되거나 방송을 탔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동영상이나 음성을 재생할 수 있었지만 방송을 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또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노종면 위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사진행발언 중에 관련 녹취의 내용을 이 회의장에서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박성준 간사님과 박형수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바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종면 위원** 1분짜리 짧은 녹취입니다.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따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박성준 위원** 따로 하지요, 뭐.

○**위원장 박찬대** 따로 하실까요?

그러면 두 분만 잠깐 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부분은, 노종면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간사님 두 분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야당 측에서 두 분이 했고요. 야당 측에서 김병주 위원님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여당 측에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 사이에 박수민 위원님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고 그리고 여당 측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다음에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요. 그리고 간사님들의 협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노종면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라성 같은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운영위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서울 개포동·세곡동·일원동·수서동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출발한다는 각오로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당의 운영위원으로 새로 보임된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기대를 해 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 처음 회의 들어왔습니다만 법안 심사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좀 경악스럽다,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유사 법안이 지금 한 12개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앞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하고 또 개정안 조문대비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전문 위원의 검토의견은 거의 한 페이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그 내용들을 보면 ‘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우려되는 행위를 함에도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어 인권위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안자의 제안 이유에 있는 내용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하고 있고 일방적인 그런 주장만 담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라든지 또 법률 전문가라든지 또 해외 사례라든지 위원들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검토의견을 그동안 해 왔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좀 충실하게 찬반 또 다른 법률적인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심의할 수 있도록 좀 더 법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문위원들께서는 잘 반영하셔서 충실한 검토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운영위가 늦었지만 오늘 제대로 구성이 돼서 간사도 선출하고 또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이렇게 얼굴 봐서 너무 반갑네요. 앞으로 자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실제 국회법에도 월 2회 이상 상임위를 열게 돼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운영위 전문 국회의원 했습니다. 21대 때 제가 3년에 걸쳐서 계속 운영위를 했고 22대 때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위가 늦게 구성이 되고 또 국가적인 아주 대사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안 열려서 국민들께 아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벌써 두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운영위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적인 열망은 물론 12·3 내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하고 있고 청문회도 하고 있지만 사실 상임위에서 또 규명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그때 제대로, 12·3 내란 당시에 사무처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지 또 어떻게 수행을 하고 6시간 만에 어떻게 막았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고 앞으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건지, 국회 경찰이 있는데 지키는 그 경찰을 국회 직속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진상조사와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중인으로 채택을 해서라도, 대통령실은 아마 사전에 알았을 겁니다, 12·3 내란 이전에. 몰랐다면 다 무능한 거지요. 왜냐하면 징후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용현 장관이 장관 지명될 때 이미 8월 달부터 내란이 일어나고 계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계속 묵살을 하고 하니까, 실제 본인들은 충

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고 또 12·3 내란에 동조하고 이런 것들의 진상이 저는 정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운영위는 한 번 열긴 했지만 제대로 된 규명을 사실 못 했지요. 인권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이고 두 번째가 인권에 대한 겁니다. 12·3 내란 당시에 45년 동안 가장 최악의,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국민의 인권이 계엄군의 총칼 앞에 무참히 유린되는데도 인권위원회이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그걸 알고도 집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성명서 하나 안 내고. 그리고 나서 인권위는 피해자인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지 못하고 또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 할망정 내란수괴 윤석열이나 내란에 동조해서 내란수괴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고 또 내란에 참가했던 계엄사령관들을 옹호만 했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 희생한 국민들의 인권은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3개 부처를 소집을 해서 좀 늦었지만 12·3 내란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운영위가 해야 되는 것이 국민께 해야 되는 도리이고 우리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걸 제대로 못 한다면 인권위원 모두는 직무유기입니다.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란은, 그렇게 이걸 제대로 규명을 안 하니까 지금 내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국민께 충성을 해 왔는데 내란만은 막아야 되는 거지요, 외환도 막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 운영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여러 번 운영위원회의 출석을 송달했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운영위, 특히 우리 국회의 권위에 대한 상당한, 지금 심각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 등을 취했지만, 지금 특검은 또 절차는 맑아 가고 있는데 국정조사라든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일방적인 불참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여야의 운영위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의 일원으로 단호하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협의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 인권위원장 안창호와 그다음에 상임위원 김용원의 운영위 출석의 태도라든가 발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보임하신 여당의 운영위원회들과 함께 우리 국회에서 우리 입법부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해 나가야 될지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양당의 간사님들께서 노총면 위원이 제안했던 음성 재생 송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을 재생할 수는 없고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의 나머지 시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총면 위원 여당 간사님께서 반대해서 안 된 건가요?

○위원장 박찬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총면 위원 다른 여당 위원님들도 듣고 싶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재생하지 못

하게 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고.

지금 다른 시청각자료는 여기서 다 공개가 됩니다. 그게 시대가 바뀌어서 가능해진 건데 음성이나 영상 재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별한 제재를, 사실상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정리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좀 시대에 맞는 그런 상임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제가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하려고 했던 이 육성 녹취는 상임위가 끝나는 즉시 언론에 배포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권 모 씨에 대한 인사청탁이 어떻게 성사되었는가, 어떻게 현실로 되었는가? 김용현 당시 처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명태군 씨가 그 당시에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은 2022년 7월 4일 자 카카오톡입니다. 당사자가 명태군 씨에게 보낸 거예요. 이 명태군 씨의 녹취도 7월 4일에 녹음된 거예요. 김용현 씨를 경남에 있는 김 모 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창녕 출신이고.

그리고 또 김용현 씨가, 그 당시의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스페인 순방 중일 때,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때 청탁이 이루어졌음을 7월 4일에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7월 1일 자로 귀국했는데 6월 말 7월 초 사이에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대화에 나옵니다.

‘항공에 김 모모 회장이라고 만났는데 김용현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별 3개라며? 저 친구도 별 3개 공군이 있고. 그래, 그 사람 창녕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김용현 씨가 권 씨를 부를 거예요. 나는 이제 김용현이 대통령 부부와 스페인에 같이 갔다 하길래 권 씨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더라고. 그런데 그다음 날 김용현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그리고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 내가 김용현 처장한테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있다던데, 그 모임이 있던데 내가 불러 가지고 격려를 좀 해 주고 챙기라 했다. 그리고 엊그제 그 권 씨를 만났다. 김용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를 할 거고 그 누구냐? 대통령 조카 황종호,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는 행정관 그 황종호, 내가 황종호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해라 이렇게 권 씨에게 얘기를 해 줬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황종호 씨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통화하는 사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진급 얘기도 합니다. ‘그래, 하여튼 저 뭐야, 진급도 해야 되잖아. 사람들 좀 많이 붙여 줄 테니까, 사람들한테 권 씨가 잘하니까 진급도 하겠지’. 그리고 실제로 권 씨는 진급합니다.

이런 내용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명태군 씨의 허풍이었는지? 그런데 허풍이었으면 왜 당사자인 그 권 씨는 명태군 씨에게 ‘고맙습니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 국회가 규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에서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고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위원님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거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지요, 국민들께서 혼란해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안질의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 녹취록하고 녹음파일이 방송에 나온 것 외에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반드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행입니까?

○위원장 박찬대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고요. 22대 운영위 지금 한 10개월째 그 관행을 존중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양문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이 관행은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기술 발전과 국민들의 요구 사안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은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위원장 직권으로 충분히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두 분 간사님이 이제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운영위를 진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의 원만한 진행 그리고 지금 양문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대 상황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면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면.....

윤종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지난 11월 달에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이재강 의원님이 예결위 질의 당시에 국회방송 화면 송출 문제가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윤석열 내란으로 혼란스러운데 국회 안에서도 겸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당시 국회방송 화면 송출은 제삼자인 누가 봐도 정치적 편향성 또는 편파성을 가진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컨대 윤석열 정권이나 김건희 여사 비리를 지적하는 PPT 화면을 질의 도중에 띄울 때는 회의장 전체 화면이나 질의하는 이재강 의원님 모습을 화면으로 띄워서 PPT가 송출되지 않도록 하고 윤석열 정권이나 김건희 여사 비리와 관계없는, 다른 의원님들이 PPT를 활용해서 질의할 때는 PPT가 전체 방송 화면으로 송출되는 식으로 정말 중립적이어야 될 국회방송이 아주 편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방송 화면을 송출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재강 의원님이 강력히 항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국회사무처에서 해당 PD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당 PD가 슬그머니 당시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배치되었다는 제보가 저희 의원실에 접수되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이 생명처럼 존중받아야 될 국회방송에서 이렇게 일부 잘못된 인사들에 의해서 편파적인 화면 송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던 것인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슬그머니 해당 PD를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면 동일한 일들이 다시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합당한 조치를 요구해 주시고 절대 그 진위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기 전에 그 해당자를, 담당자를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국회사무처에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국회방송 화면 송출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들이 여러 모든 상임위에 걸쳐서, 특히나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이 형성되는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이런 데,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상임위들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그리고 정진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리고 서미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야당 위원님들만 나오셔 가지고……

혹시 여당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이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 듣고 마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이 순서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국회가 탄핵소추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소추인은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돼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그리고 탄핵소추 즉시 직무정지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지금 희한하게도 서울구치소로 비서실장 등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대통령비서실이,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계속 면회를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대통령실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검찰은 명태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겼습니다.

평소 검찰은 본 사건이 혐의가 없으면 종결하지 않고 먼지를 털어서라도 인지수사를 해서 다른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정치수사를 야당을 상대로 특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 사건은 애초에 횡령 사건으로 출발을 했다가 두 가지 큰 의혹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선후보 당시에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만약 이것이 밝혀진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감추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사건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려고 사건을 당겨 온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형사사법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고 법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는 여

전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출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권한대행 최상목 사이에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것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를 옆에 앉아 있는 정진석 실장이 몰래 건네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속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뜻이 아니라 구치소에 면회를 간 정진석이 윤석열 피고인의, 피소추인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또 내란죄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피소추인, 피고인 윤석열의 뜻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입장으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좀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혼란을 틈탄 무리하고 부적절한 인사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진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중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핵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자료, 동영상·녹음 등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것만 운영위에서 재생할 수 있다, 보여 줄 수 있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국회 단전 사태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3 계엄 당시에 국회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란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께서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 앞에서는 침묵하고 정치 공작이라는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하셨는데,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 6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 5분여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전을 한 것은 제2의 계엄을 획책했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측은 단전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CCTV는 단전 상황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직접 차단기를 내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윤석열 측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5분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사 갈림길이자 풍전등화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이 단전 순간을 보여 주는 CCTV 화면을 만약에 제가 오늘 운영위에서 재생하자 했다면, 관행에 따른다면 아마 국힘 간사님께서 동의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행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될 때 또 방송에 방영된 것만 이 자리에서 재생한다는 관행을 반드시 폐기해야 되고 또 시대에도 뒤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CCTV는 말이 없지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

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한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여당의 위원님들도 의사진행발언 두 분 신청을 하셨는데요. 많이 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박형수 간사님께서 마무리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진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주진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거든요.

○서미화 위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박수민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점점 의사진행발언이 열띠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 말씀 듣고 박수민 위원님 말씀 듣고 서미화 위원님 말씀 듣고 박형수 간사님 말씀 듣는 걸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야당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희도 반론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잠깐 참고말씀 드리면 약간 혼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저한테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판단하시기 좋도록 저도 위원장님께 반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음파일을 여야 합의 없이 하는 부분은 이게 되게 오래된 국회 관행이고요 그 배경에는 헌법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면책특권을 국회의원들이 받지만 확인되지 않은, 특히 언론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체크되지 않은 것을 면책특권 때문에 함부로 틀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국회의 품위 문제도 있고 또 그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송출됨으로써 오히려 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도 녹음파일 틀 것 엄청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욕설했던 파일부터 시작해서 위증을 교사하는 장면의 파일 같은 것, 다 확인되지 않은 걸 장시간 틀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걸러서 송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안 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명태균 이슈 하나만 놓고 명태균 이슈 관련 녹음파일이 입수됐으니까 여기서 튼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태균 이슈 관련해서는 결국 이게 정당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천 문제라든지 여론조사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를 하고 중앙지검에 보낸 것이 불과 어제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한 특검 계속 말씀하시는 특검 공짜 아닙니다. 한 건당 백 몇십억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요. 특정 정당, 특히 야당에서 지금 대척점에 있는 여당 관련된 이슈를 일방적으로 특검을 단독 통과시켜서 추진한다, 이게 관례가 되면 이제 여야 간에 다수당이 되면 무조건 특검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관행이 잘못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정당 민주주의 따지면 돈정치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민주당의 돈봉투의혹이나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엄연히 대선 자금으로 6억 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2심 사실관계가 전부 다 확정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일언반구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군 이슈만 딱 들고 나와서 이것만 특검 하자, 이것을 위해서 운영위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야 간 균형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 중립에도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추미애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접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꾸 우리 국민의힘 부분만 말씀하시는지,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 송금한 그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그것에 대해서 수감 중일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을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증거 인멸을 하려 간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윤종군 위원 내란수괴를 접견하는 것과 다르지요.

○주진우 위원 제가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윤종군 위원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요.

○주진우 위원 북한에 800만 불 펴 준 것이 비교 대상이 안 됩니까? 북한에 800만 불을 펴 줌으로써 그게 국익에 손실되는 측면이 얼마나 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 당시의 접견에 대해서도 그려면 증거 인멸을 했다는 논리로 얘기하면 민주당 위원님들 다 수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서실장이 접견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다녀온 것을 가지고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은 과도하고요.

정진석 실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 답변 중에 쪽지를 줬다는 부분도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현재 비서실 업무로써 대통령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권한대행의 답변을 보좌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처럼 국회운영위가 중립적으로 운영되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여야 균형이 맞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현안질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의사진행발언……

○주진우 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노종면 위원 현안질의를 하지 말자?

○윤종군 위원 운영위에 나오게 해야지, 그것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운영위가 뭐 하려 있습니까?

○정진욱 위원 현안질의를 하지 말자고요?

○**주진우 위원**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을 다 듣고서 제가 잘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토론과 자료들이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단전·단수 그 동영상, CCTV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저희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실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검해 보고 있는데 그 당시 단전, CCTV에 잡혔던 지하 1층 그 시점이 계엄해제 의결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 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사진행에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 딱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전체적인 것도 아니었고 지하 1층에 부분적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꺼지자마자 다른 등이 켜져 가지고 전체적인 암흑 상태는 어떤 부분에서도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점이 계엄해제 의결 이후였다, 이 점이 확인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되고 파악되고 진행돼야 된다, 이 말씀 꼭 올리고 싶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사실관계 문제라 보충해서 1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찬대** 잠깐만요.

일단 의사진행발언 말씀은 끝나신 거지요?

○**박수민 위원** 다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건 내란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노종면 위원님 간략하게, 중간에 들어오신 거니까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그 부분만 관련해서, 계엄해제 의결 이후라는 것은 전제하고, 그것은 확인된 팩트로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1차 불을 내렸을 때 비상등이 들어왔지요. 그다음에 그것까지 또 차단했잖아요. 그다음에 밝아진 것은 CCTV가, 그걸 적외선 촬영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해서 희미해진 거지 새로운 전원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서미화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의 의사진행 때문에 많이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서미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정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 힘당 운영위원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시지도 않고 단전에 대해서 이런 변명들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인권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가 내란수괴를 비롯한 내란잔당들의 대피소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이름을 달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면서 윤석열 탄핵심판을 뒤흔드는 이 모든 사태의 최대 주범이 안창호 위원장입니

다. 다음 운영위 때는 반드시 안창호 위원장과 또 김용원 위원을 비롯한 인권위를 운영위에 불러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12·3 내란 사태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될 정당이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연히 공개돼야 될 녹취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협의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가 두려운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여당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자면, 정말 이런 사실 확인들을 해야 되고 또 창원지검 수사 발표가 정말 가관 아니었습니까. 맹탕도 그런 맹탕이 없습니다.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고요. 내란의 직접 원인으로 제기된 명태균의 게이트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넉 달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축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만 키웠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이런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몽니를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발목을 그만 잡고,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계속 무작정 버티는 것은 멈춰 주실 것을 정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한술 더 떠서 법이 통과돼도 명태균 특검법 거부하겠다고 하던데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동료로서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점에서도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대통령실을 불러서 현안질의 심각하게,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형수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오늘 여야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첫날이어서 저도 발언을 자제하고 있고 또 우리 당 위원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 발언하신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정치공세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그대로 다 받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종면 위원이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고 또 22대 국회를 운영하면서 합의문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방영된 것 이외에 방송을 하거나 녹음을 틀 때는 여야 간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합의 자체를, 협의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 그런 협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관례는 필요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수사보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또는 국회에서 그걸 다 조사하고 처벌까지도 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 그건 국가기관의 역할들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도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사위이고,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또 법사위에서도 사람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문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그런 역할이 또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 비서실장이나 또는 민정수석이 면회하는 것, 그게 마치 대통령이 무슨 뜻을 전달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도, 이것도 대통령 뜻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면회를 갔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그렇게 추론이 가능한 겁니까? 추론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되어야 됩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을 단순히 면회 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것까지 연결시키는 건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명태균 특검법은, 지금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를 해 놓고 27일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민주당의 정략적인 주장을 이 운영위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됩니까? 수사대상이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겠다는 특검법 발의하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걸 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운영위면 운영위와 관련된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의사진행발언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절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중간에 끼어드는 그것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제지를 해 주셔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박성준 간사님 간단하게 하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박형수 수석님을 비롯해서 여당 국민의힘 위원님들을 이렇게 운영위에서 열굴 봐니까 더욱더 반갑고 좋습니다.

사실 운영위, 국회 상임위라고 하는 것은 정부 비판·견제·감시 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과 관련된 모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과연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상임위가 왜 열립니까? 운영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는 긴급현안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당 위원님들이 오셨다고 하면 국회운영위에 대통령실 경호처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동안 불출석하면서 내란과 관련된 옹호로서의 입장만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야당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녹취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행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박형수 수석과 협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더 문제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위원으로 활동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보자, 바꿔 보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되는 건데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명태균은, 여러분 오늘 노종면 위원이 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경호처장이라고 하는 김용현도 연루돼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명태균은 지금 계속 여론조작에 대한 부분과 공천개입, 선거개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당사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운영위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질의를 안 합니까? 그게 운영위의 활동사항에 맞는 거예요? 수사 진행 상황이니까 질의를 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논리로서 지금 국회 역사상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모든 인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인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 산하기관 인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실이 관여해서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과 만나서 이런 의견들을 교류한 것이 아니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불러서 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인사가 진행되느냐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운영위의 활동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운영위가 앞으로 왕성한 활동과 여야 간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현안질의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보여 줬던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또 하나 내란에 대한 옹호라든가 또 하나 뭐지요? 지금 모든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는 그런 모습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보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습은 보여 주지 않는 것이 운영위 활동사항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야당 쪽의 몇몇 위원들께서 추가 의사진행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이 정도에서 중단하는 게 좋겠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 사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 경계선에 있거나 또 넘어서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님들의 입을 사실은 의사진행만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막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경계선에 있거나 좀 의사진행발언으로 넘어서는 발언이 있다 그러면 또 상대 당의 적절한 반박과 논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으면서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쪽이 좀 넘치면 다른 쪽도 그쪽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박형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뭐냐 하면 방송에 송출되었

던 내용은, 합의되지 않으면 영상이나 음성은 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운영위 전체회의에 의결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2024년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이 될 때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결이 2025년도 운영위 전반에도 적용될 건지 아니면 2025년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될 때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수정 변경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지켜야 될 원칙 하나는 아까 박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의 의견이,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상대방의 발언을 반대하는 발언이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운영위 기간 중에서는 서로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는 발언이 야당에서도 또 여당에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25년도 우리 운영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양쪽의 충분한 발언과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강명구 강유정 고민정 권성동 권영진 김대식 김병주 김성희 김승수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박수민 박찬대 박형수 서미화 서지영 신장식 양문석 윤건영
윤종군 이소영 전용기 정진욱 주진우 천하람 추미애

○청가 위원(1인)

김성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4)

이상 2건 2월 14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이상 2건 2월 17일 회부됨